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69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반도체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고시에서 사용하는 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산업, 위원회, 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사업시행자, 조성 계획 등의 용어를 정의함

다. 적용범위(안 제3조)

-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안 제4조)

-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을 명확화함

마.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안 제5조)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입주 수요,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 지정요건의 세부 검토 사항을 명시함

바. 지정계획 공고(안 제6조)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계획의 공고 기간 및 공고 시 안내할 사항을 명시함

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의 신청(안 제7조)

- 법령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 및 조성 계획 제출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

아. 지정의 사전 검토 및 조정(안 제8조)

- 위원회 심의에 앞서 소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사전 검토·조정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구체화함

자. 산업통상부장관의 직접 지정(안 제9조)

- 법률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반도체클러스터 직접 지정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세부절차를 구체화함

차. 지정 및 공고(안 제10조)

-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 계획 승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함

카. 지정의 변경(안 제11조)

-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변경의 신청·검토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타. 지정의 해제(안 제12조)

-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해제의 검토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과. 재검토기한(안 제13조)

- 고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재검토 기한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한누리대로 402 세종정부청사 13-1동 산업통상부
반도체정책과
- 전자우편 : ejbae@korea.kr
- 팩스 : 044-203-472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반도체정책과(전화 (044) 203 - 4275, 팩스 044-203-4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